

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서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)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갱신 심사결과를 통보하오며,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○ 대상기관명(기관기호) : 한일재가복지센터(3-41110-00277)

○ 갱신 심사결과 :

☒ 적격 (재지정 승인)

☐ 부적격

○ 재지정 유효기간 : 2025. 12. 12 ~ 2031. 12. 11.

2025년 12월 12일

장 안 구 청 장

